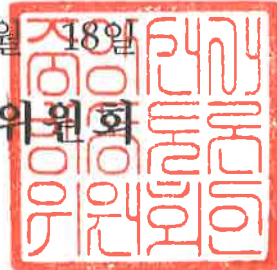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관련 공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코로나19 확진 시 토론회 참여에 관한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개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된 장소에서 화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중계방송 방법은 안정성·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중계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다.